

한화생명 제로백H종신보험 무배당

2025. 6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에 관한 사항

가. 보험종목의 명칭

- 한화생명 제로백H종신보험 무배당

나. 보험종목의 구성

세부보험종목	
보장형 계약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표준형
적립형 계약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	해약환급금 보증
	해약환급금 미보증

- ※ 단,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 ※ 단, ‘적립형 계약’의 경우 보장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시에만 적용한다.
- ※ 단,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의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에만 적용하며, 이하 ‘스마트전환형 계약’이라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 보험기간

구 분		보험기간
보장형 계약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종신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나. 보험료 납입기간

구 분		납입기간
보장형 계약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7년납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10년납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20년납
적립형 계약		종신납

스마트전환형 계약	일시납
-----------	-----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1) 보장형 계약

(가)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 가입최저나이 : 만 15세
- 가입최고나이 : 성별, 납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음

구분		최고가입나이
7년납	남자	70세
	여자	71세

(나)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 가입최저나이 : 만 15세
- 가입최고나이 : 성별, 납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음

구분		최고가입나이
10년납	남자	66세
	여자	69세

(다)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 가입최저나이 : 만 15세
- 가입최고나이 : 성별, 납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음

구분		최고가입나이
20년납	남자	66세
	여자	69세

(2) 적립형 계약 (전환시점의 나이)

피보험자	전환시점의 나이	
	남자	여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만15세 ~ 75세	만15세 ~ 75세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3)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시점의 나이)

피보험자	전환시점의 나이			
	해약환급금 보증		해약환급금 미보증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만15세~70세		만15세~70세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라. 보험료 납입주기

- (1) 보장형 계약 : 월납
- (2) 적립형 계약 : 수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조건부인수를 위한 부가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표준하체인수특약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하지 않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나. 적립형 계약

(1)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3) 보험료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

- 최저한도: 20만원
- 최고한도: 전환시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함)의 20%

(나) 추가납입보험료

-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제10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른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text{기본보험료의 } 200\% \times \text{적립형 계약 전환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적립형 계약 전환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 최저한도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1) 기준보험료 및 기본보험료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환금액

※ 전환금액: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단, 특약보험료 제외).

(3) 보험료 납입한도

(가) 이 계약의 기준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준보험료 총액’의 2배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한 한도로 한다.

- 기준보험료 $\times (1 + 10\% \times \text{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준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는 전환시를 1년으로 하며, 10년을 최대 한도로 한다. 또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한다.

7.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3개월분 이상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단,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연체된 기간 동안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보장형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

(2) 적립형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다만,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의 합계액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3) 스마트전환형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단, 연금선지급기간 중 연

체된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나.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

다.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기본보험금액은 해지 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나.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1)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각각에 대하여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2) 1회당 인출가능금액

(가)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제외)의 50% 이하

(나)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전환금액(전환이후 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

(가) 적립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나) 스마트전환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 (4) '나'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단,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적립액과 예정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적립액)이 아래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가)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

(나)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5배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나.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 전환형 계약

- 이 계약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계산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 - α)

-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시중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하며,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A1×β1 + A2×β2 + A3×β3 + A4×β4)

A1 : 국고채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4 :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주) 1. 국고채 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2. 회사채 수익률은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를 기준으로 한다.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1년)을 기준으로 한다.

4.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양도성예금증서(91일)을 기준으로 한다.

○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

금융채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_1) = \frac{a}{a+b+c+d}, \quad \text{회사채 가중치}(\beta_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_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_4) = \frac{d}{a+b+c+d}$$

※ **a** :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균의 평균)

b :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균의 평균)

c :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균의 평균)

d : 보험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나)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 및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 -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

※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외부지표금리 가중치(a)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 a)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외부지표금리 가중치(α) = $\frac{A/B+C}{A+C}$

○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하며, 가중치는 0.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가) 적립형 계약 :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나) 스마트전환형 계약 :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5)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나.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보장형 계약의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및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의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및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은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표준형’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 나.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다. 회사는 보장형 계약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및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한다.

(1)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 계약일부터 3년 미만
해약환급금 없음
- 계약일부터 3년 이후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30%

(나) 보험료 납입기간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2)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및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가) 계약일부터 3년 미만

해약환급금 없음

(나) 계약일부터 3년 이후 7년 미만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30%

(다) 계약일부터 7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라. ‘다’항 ‘(1)’호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후’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턴의 기

간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으로 하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 후’로 한다.

마. ‘다’항의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로부터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으로 하며,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의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로 한다.

바. ‘다’항 ‘(2)’호 ‘(나)’목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7년 미만’이라 함은 ‘마’항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로부터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7년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7년 미만’으로 하며,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의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로 한다.

사. ‘다’항 ‘(1)’호 ‘(나)’목 및 ‘다’항 ‘(2)’호 ‘(다)’목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한다.

아. 회사는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및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자. 회사는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및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또는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 (별첨 제2호) 또는 (별첨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4.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나. 스마트전환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다. 적립형 계약

(1)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제15조(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 제(1)호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

을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15.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나.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1) 적립형 계약

(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나)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한다.

(2) 스마트전환형 계약

(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다)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의하여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계약은 월대체보험료에서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제외하며, 연금선지급이 완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다시 월대체보험료에 포함한다.

16.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나. 적립형 계약

제15조(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 제(1)호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제15조(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 제(2)호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항에서 정한 보장형계약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times \frac{\text{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2) 「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다.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다’항 제(1)호에서 정한 전환금액과 전환한 후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한다.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times \frac{\text{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2) 「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마.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단, 특약보험료는 제외).

바. ‘마’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할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하는 경우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시

감액신청이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감액신청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신청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text{감액신청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2)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기준사망보험금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및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0%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10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나)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0%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0% +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11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사망보험금으로 한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제17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마’항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1) 기본보험금액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사망보험금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

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최저사망보험금

(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16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나)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타’목에서 정의한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다) ‘(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전환일 이후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사’목에서 정의한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스마트전환형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에 한함)

19.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부,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각각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일 이후 7년 이상 경과한 계약

(2)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전환되지 않은 계약

(3)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다만,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이후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제21조(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특칙에 관한 사항) ‘사’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계약은 적립형 계약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4)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나. ‘가’항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전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자는 전환신청시 약

- 관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을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 다. ‘가’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계약자는 전환신청시 약관에서 정한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을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 라. 보장형 계약에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나’항에 따라 선택하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는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이어야 한다.
- 마. 스마트전환형 계약에 피보험자가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다’항에 따라 선택하는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이어야 한다.
- 바. ‘가’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
- 사. ‘나’항에 따라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와 다를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 아. ‘나’항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일 경우 ‘나’항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자. ‘다’항에 따라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와 다를 경우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 차. ‘다’항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일 경우 ‘다’항에서 정한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카. ‘가’항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 타. 전환일 당시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함)으로 한다.
- 파.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적립형 계약으로 한다.

- 하. 전환일 당시 스마트전환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적립형 계약으로 한다.
- 거.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의 적립형 계약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위험률, 이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적용한다.
- 너. 기타 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장형계약 가입 당시의 적립형 계약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20.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부를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 (1) 보험계약일 이후 7년 이상 경과한 계약
 - (2)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전환되지 않은 계약
 - (3)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다만,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이후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제21조(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특칙에 관한 사항) ‘사’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계약은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 (4) 전환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 (5) 보장형 계약의 전부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 나. ‘가’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으로 한다.
- 다. 보장형 계약에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나’항에 따라 선택하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는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이어야 한다.
- 라. ‘가’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
- 마. ‘가’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바. ‘나’항에 따라 선택한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와 다를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 사. ‘나’항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일 경우 ‘나’항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

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아.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스마트 전환형 계약으로 한다.
- 자.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보장형계약 가입 당시의 스마트전환형 계약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위험률, 이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적용한다.
- 차. 기타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금,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장형계약 가입 당시의 스마트전환형 계약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카. ‘가’항에도 불구하고, ‘나’항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직전에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전환후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차’목에서 정한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21.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관한 사항

이 특칙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을 선지급한다.

가. 이 특칙은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나. 특칙의 보험기간, 연금선지급 개시나이, 연금선지급 기간

보험기간	연금선지급 개시나이	연금선지급기간
연금선지급 개시일부터 최종 연금선지급일까지	피보험자 나이 45~90세	2년 ~ 20년

다. 특칙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조건

각 호의 계약에 대하여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를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보장형 계약

- (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계약
- (나)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경우
- (다)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 (라) 연금전환특약에 의해 연금전환하지 않은 경우

(2) 스마트전환형 계약

- (가) 전환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나)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경우

(다) 연금전환특약에 의해 연금전환하지 않은 경우

(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라. 특칙의 보험료 납입기간

- 해당 없음

마. 특칙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하지 않음

바. 특칙의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다만, 약관 별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따른다).

사. 기타 특칙 운용에 관한 사항

(1) 연금선지급 대상금액 및 연금선지급기간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 시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연금선지급 대상금액 및 '나'항의 연금선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2) 연금선지급 방법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선지급 대상금액을 연금선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연금선지급금액으로 하여 이 특칙의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지급한다.

※ 연금선지급 해당일: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일' 및 연금선지급기간 이내의 매년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일'과 동일한 월, 일(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3) 연금선지급 후의 처리

(가)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해당일에 감액된다.

(나) 계약자는 연금선지급기간 중 언제든지 연금선지급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선지급을 종료한다. 또한, 계약자는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이후에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 연금선지급기간 중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어 해지되는 경우 포함)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약정한 연금선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금선지급은 종료된다. 다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연금선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연금선지급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

한다.

(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금 선지급 개시 이후에 해당 특약의 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는 월대체보험료에서 제외하고, 매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월계약해당일에 해당 특약의 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연금선지급일까지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경우 해당 특약의 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는 월대체보험료에 포함한다.

(마) 연금선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료의 추가납입(스마트전환형 계약에 한함),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스마트전환형 계약에 한함),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적립형 계약 전환,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보장형 계약에 한함), 연금 전환 및 선지급서비스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 선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연금선지급일까지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기타

가. 1구좌의 구성

1구좌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함.

나.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3대 질병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계약

- 보험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중 하나 또는 전부

(2)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3대 질병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피보험자

- 전환전 계약 피보험자

(3) 운용방법

(가) 회사는 연금전환전계약의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 포함 가능)을 보험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한다.

(나)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3대 질병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연금액은 연금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며, 연금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위험률, 이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적용한다.

(다)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경우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전환 시 「보장형 계

약 가입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단, 연금사망률의 가입나이는 보장형 계약 가입시점 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는 전환시점의 나이로 한다)」이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전환시점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 출생전인 경우 연금전환시점 피보험자의 보장형 계약 가입시점 나이는 0세로 한다.

(라)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3대질병연금전환특약 무배당으로 연금전환시 회사가 정한 계약인수지침 등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다.

다.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취급하지 않는다.

라.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적립형 계약 전환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계약의 고객안내사항

기본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안내한다.

- (1)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과’목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의 개념 및 월대체보험료 공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
- (2)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다는 사실
- (3)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대체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 (4)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로 충당 가능한 개월수
- (5) 제(4)호의 월대체보험료로 충당 가능한 개월수는 안내시점의 월대체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공시이율, 위험보험료, 부가특약의 보험료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바. 헬스케어 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1)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신용]정보수집,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한다.
- (2)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다.
- (3)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사.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시 회사는 전환신청서상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안내사항”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납입보험료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원)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	표준형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원, %)

경과기간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		표준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 상기 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은 중도해지시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 계약일부터 3년 미만

해약환급금 없음

- 계약일부터 3년 이후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30%

(나) 보험료 납입기간 후

약관에서 정의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모집자 확인]

보험모집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모집자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자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_____ (인/서명) / 친권자_____ (인/서명)

※ 상기 안내사항은 견본양식으로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첨 제2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안내사항”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납입보험료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원)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표준형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원, %)

경과기간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표준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 상기 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은 중도해지시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가) 계약일부터 3년 미만

해약환급금 없음

(나) 계약일부터 3년 이후 7년 미만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30%

(다) 계약일부터 7년 이후

약관에서 정의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모집자 확인]

보험모집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모집자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자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_____ (인/서명) / 친권자_____ (인/서명)

※ 상기 안내사항은 견본양식으로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첨 제3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안내사항”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납입보험료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원)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표준형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원, %)

경과기간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표준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 상기 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은 중도해지시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가) 계약일부터 3년 미만

해약환급금 없음

(나) 계약일부터 3년 이후 7년 미만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30%

(다) 계약일부터 7년 이후

약관에서 정의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모집자 확인]

보험모집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모집자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자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_____ (인/서명) / 친권자_____ (인/서명)

※ 상기 안내사항은 견본양식으로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